|  |  |  |
| --- | --- | --- |
| **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보감회령 2012년 제1호《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은 2012년 7월 10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판공회 심의를 통과한 바, 이에 공포한다. 본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항준파(项俊波)2012년 7월 25일**제1장 총 칙****제1조** 보험회사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보험회사, 보험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라 칭하는 것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한 상업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 지배주주라 칭하는 것은 그 출자액이 보험회사 총 자본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주주 또는 보유하는 지분이 보험회사 총 지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또한 출자액 또는 보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출자액 또는 보유한 지분이 향유하는 표결권이 주주회의,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제4조 중국** 보감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지배주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행위 및 의무****제1절 통제행위****제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통제권을 선의로 행사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통제권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제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신중하게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의 지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명 인선은 중국 보감회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법에 의거하여 그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의 직무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직무이행을 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 법률과 보험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지배주주와 보험회사에 임직하는 인원에 대해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를 진행하여, 이익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업무인원은 보험회사의 집행동사와 고급관리인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동사장은 본 조항 제2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독립적이고 완벽하며 건전한 회사 관리구조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 회사의 자주적 운영을 보호하고 보험회사 동사회, 감사회와 관리계층의 직권행사에 부당한 제한이나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없다. **제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보험회사에 임직하는 인원을 사주하여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기타 주주, 보험 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권익에 위해를 가하는 결정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는 보험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을 신중히 지명해야 하며, 지명인선은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명한 보험회사의 동사는 보험회사 전체이익 최대화를 원칙으로 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배주주의 이익도모로 인해 보험회사, 보험 가입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보험회사 동사회의 의사결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 보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 보감회는 법에 따라 동사의 법률 책임을 추궁하고 표결 시, 이의 표명을 거쳐 증명하고 회의기록에 기재한 동사는 제외한다. **제11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 재무와 자산독립을 보호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재무계산, 자금변동, 자산관리와 비용관리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대출, 담보 등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자금을 점유할 수 없다. **제2절 거래행위****제12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와 진행하는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무상 또는 명확히 불공평한 조건으로 보험회사에게 자금 또는 기타 중대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보험회사 간의 관련거래는 《보험회사 관련거래 관리 잠행방법》 등 중국 보감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관련거래, 이윤분배, 자산재편성, 대외투자 등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14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그 보험회사의 지배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속하는 상업적 기회를 취할 수 없다. **제1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에 그 비공개 발행 채권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채권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매한 채권은 해당 차수 발행채권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대리하여 상환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게 그 급여, 복리후생, 보험, 광고 등 비용을 지불 또는 우선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3절 자본협조****제1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에 대해 내린 자본협조 승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제1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재무상황의 양호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튼튼한 자본력과 지속적인 출자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감회가 법에 의거하여 그 자본금 증자를 명령할 경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 기타 주주에 협조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험회사 자본금이 보험감독관리 요구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발전전략, 업무발전계획 및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자본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자본수요가 자본보충 능력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2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재무상황, 자본 보충능력과 신용상황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그 지배하는 보험회사 및 해당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출자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절 정보공시와 보안유지****제22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국가 유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공시정보의 적시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 기재할 수 없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정보공시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중대 정보의 범위, 보안유지 조치, 보고와 공시 등 유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보험회사 간의 중대한 관련거래가 진행되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정보공사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독립 동사가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발급한 서면의견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보험회사의 보안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고객정보와 기타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와 관련되고, 보험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 또는 루머가 공공매체 상에 노출되는 경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즉시 유관 보도 또는 루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5절 감독관리 협조****제27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 정책을 적시에 이해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의견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보감회에 보험회사의 업무경영과 위험관리 등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제28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보험회사의 지분권 투자전략과 발전전략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진행할 경우, 적시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중국 보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유관 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보험회사 지배권 변경을 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양도기간에 양수인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지배권 인계계획을 제정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보험가입인, 피보험인,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지배권 인계계획은 양도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규정위반 또는 승낙한 행위 위반에 대해 처리조치를 약정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제31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정보당안을 건립하고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유관정보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2조** 지분양도로 인해 보험회사 지배권이 변경되어 보험회사가 중국 보감회에 지분권 변경 심사를 신청할 때, 본 방법 제30조가 규정한 지분권 인계계획을 제출하고 유관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아래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1)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정황 (2) 지분권 지배관계 구조도 (3) 심계를 거친 재무보고서(4) 기타 유관정보와 자료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지분권 지배관계 구조도는 보유지분이 100분의 5이상인 주주의 기본정황, 지분권 보유목적과 보유정황을 포함해야 하며, 최종 지배권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구를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34조** 보험회사에 엄중한 손실, 상환능력 부족, 여러 차례의 중대한 규정위반 또는 기타 중대한 리스크가 발각되는 경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동사, 감사와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감독관리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고 회사 상환능력에 위험이 미치게 한 경우, 중국 보감회가 개정을 명령한다. 요구에 따라 개정을 하기 전, 중국 보감회는 그 향유하는 자산이익, 중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리자 선택 등 주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을 거절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보유한 보험회사 지분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6조** 보험회사 지배주주가 기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 보감회가 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제37조** 보험집단회사 지배주주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8조** 국무원 재정부문, 국무원 수권 투자기구 및 《보험집단회사 관리방법(시행)》이규정한 보험집단회사가 보험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외자 보험회사 지배주주는 본 방법 제7조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본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保险公司控股股东管理办法**保监会令2012年第1号 　　《保险公司控股股东管理办法》已经2012年7月10日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主席办公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0月1日起施行。　　　　　　　　　　　　　　　　　　　　　　　 　主 席 项俊波 　　　　　　　　　　　　　　　　　　　　　　　 　 二○一二年七月二十五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保险公司治理监管，规范保险公司控股股东行为，保护保险公司、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保险公司，是指经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保监会）批准设立，并依法登记注册的商业保险公司。 　　**第三条** 本办法所称保险公司控股股东，是指其出资额占保险公司资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或者其持有的股份占保险公司股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的股东；出资额或者持有股份的比例虽然不足百分之五十，但依其出资额或者持有的股份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股东大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的股东。 　　**第四条** 中国保监会根据法律、行政法规以及本办法的规定，对保险公司控股股东实施监督管理。 **第二章 行为及义务****第一节 控制行为** 　　**第五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善意行使对保险公司的控制权，依法对保险公司实施有效监督，防范保险公司经营风险，不得利用控制权损害保险公司、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 　　**第六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审慎行使对保险公司董事、监事的提名权，提名人选应当符合中国保监会规定的条件。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依法加强对其提名的保险公司董事、监事的履职监督，对不能有效履职的人员应当按照法律和保险公司章程的规定及时进行调整。 　　**第七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对同时在控股股东和保险公司任职的人员进行有效管理，防范利益冲突。 　　保险公司控股股东的工作人员不得兼任保险公司的执行董事和高级管理人员。 　　保险公司控股股东的董事长不受本条第二款规定的限制。 　　**第八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支持保险公司建立独立、完善、健全的公司治理结构，维护保险公司的独立运作，不得对保险公司董事会、监事会和管理层行使职权进行不正当限制或者施加其他不正当影响。 　　**第九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指使保险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其他在保险公司任职的人员作出损害保险公司、保险公司其他股东、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合法权益的决策或者行为。 　　**第十条** 保险公司控股股东提名的保险公司董事，应当审慎提名保险公司高级管理人员，提名人选应当符合中国保监会规定的条件。 　　保险公司控股股东提名的保险公司董事，应当以维护保险公司整体利益最大化为原则进行独立、公正决策，对所作决策依法承担责任，不得因直接或者间接为控股股东谋取利益导致保险公司、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受到损害。 　　保险公司董事会决策违反法律、行政法规和中国保监会规定的，中国保监会将依法追究董事的法律责任，经证明在表决时曾表明异议并记载于会议记录的董事除外。 　　**第十一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维护保险公司财务和资产独立，不得对保险公司的财务核算、资金调动、资产管理和费用管理等进行非法干预，不得通过借款、担保等方式占用保险公司资金。 　　 **第二节 交易行为** 　　**第十二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确保与保险公司进行交易的透明性和公允性，不得无偿或者以明显不公平的条件要求保险公司为其提供资金或者其他重大利益。 　　**第十三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与保险公司之间的关联交易应当严格遵守《保险公司关联交易管理暂行办法》等中国保监会的规定。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利用关联交易、利润分配、资产重组、对外投资等任何方式损害保险公司的合法权益。 　　**第十四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利用其对保险公司的控制地位，谋取属于保险公司的商业机会。 　　**第十五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向保险公司出售其非公开发行的债券。保险公司控股股东公开发行债券的，应当采取必要措施，确保保险公司购买的债券不得超过该次发行债券总额的百分之十。 　　**第十六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要求保险公司代其偿还债务，不得要求保险公司为其支付或者垫支工资、福利、保险、广告等费用。 **第三节 资本协助** 　　**第十七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恪守对保险公司作出的资本协助承诺，不得擅自变更或者解除。 　　**第十八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保持财务状况良好稳定，具有较强的资本实力和持续的出资能力。 　　对偿付能力不足的保险公司，保监会依法责令其增加资本金时，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积极协调保险公司其他股东或者采取其他有效措施，促使保险公司资本金达到保险监管的要求。 　　**第十九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根据保险公司的发展战略、业务发展计划以及风险状况，指导保险公司编制资本中期规划和长期规划，促进保险公司资本需求与资本补充能力相匹配。 　　**第二十条** 保险公司控股股东的财务状况、资本补充能力和信用状况发生重大不利变化的，应当依法及时向中国保监会报告。 　　**第二十一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不得接受其控制的保险公司以及该保险公司控制的子公司的投资入股。 **第四节 信息披露和保密** 　　**第二十二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信息披露义务，并保证披露信息的及时、真实、准确、完整，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第二十三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建立信息披露管理制度，明确规定涉及保险公司重大信息的范围、保密措施、报告和披露等事项。 　　**第二十四条** 保险公司控股股东与保险公司之间进行重大关联交易，保险公司按照《保险公司信息披露管理办法》的要求，披露保险公司全体独立董事就该交易公允性出具的书面意见以及其他相关信息，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积极配合。 　　**第二十五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恪守对保险公司的保密义务，不得违法使用保险公司的客户信息和其他信息。 　　**第二十六条** 公共传媒上出现与保险公司控股股东有关的、对保险公司可能产生重大影响的报道或者传闻，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及时就有关报道或者传闻所涉及事项向保险公司通报。 **第五节 监管配合** 　　**第二十七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及时了解中国保监会的相关规定、政策，根据中国保监会对保险公司的监管意见，督促保险公司依法合规经营。 　　保险公司控股股东认为必要时，可以向中国保监会反映保险公司的业务经营和风险管理等情况。 　**第二十八条** 保险公司控股股东对保险公司的股权投资策略和发展战略作出重大调整的，应当及时向中国保监会报告。 　　**第二十九条** 保险公司控股股东应当积极配合中国保监会对保险公司进行风险处置，并按照中国保监会的要求提供有关信息资料或者采取其他措施。 　　**第三十条** 保险公司控股股东转让股权导致或者有可能导致保险公司控制权变更的，应当在转让期间与受让方和保险公司共同制定控制权交接计划，确保保险公司经营管理稳定，维护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 　　控制权交接计划应当对转让过程中可能出现的违法违规或者违反承诺的行为约定处理措施。 **第三章 监督管理** 　　**第三十一条** 中国保监会建立保险公司控股股东信息档案，记录和管理保险公司控股股东的相关信息。 　　**第三十二条** 因股权转让导致保险公司控制权变更的，保险公司在向中国保监会提交股权变更审批申请时，应当提交本办法第三十条规定的控制权交接计划并说明相关情况。 　　**第三十三条** 中国保监会有权要求保险公司控股股东在指定的期限内提供下列信息和资料： 　　（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情况； 　　（二）股权控制关系结构图； 　　（三）经审计的财务报告； 　　（四）其他有关信息和资料。 　　保险公司控股股东股权控制关系结构图应当包括其持股百分之五以上股东的基本情况、持股目的和持股情况，并应当逐级披露至享有最终控制权的自然人、法人或者机构。 　　**第三十四条** 保险公司出现严重亏损、偿付能力不足、多次重大违规或者其他重大风险隐患的，中国保监会可以对保险公司控股股东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进行监管谈话。 　　**第三十五条** 保险公司控股股东利用关联交易严重损害保险公司利益，危及公司偿付能力的，由中国保监会责令改正。在按照要求改正前，中国保监会可以限制其享有的资产收益、参与重大决策和选择管理者等股东权利；拒不改正的，可以责令其在一定期限内转让所持的部分或者全部保险公司股权。 　**第三十六条** 保险公司控股股东有其他违反本办法规定行为的，由中国保监会责令改正，并可以依法采取相应的监管措施。 **第四章 附 则** 　　**第三十七条** 保险集团公司控股股东参照适用本办法。 　**第三十八条** 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授权投资机构以及《保险集团公司管理办法（试行）》规定的保险集团公司是保险公司控股股东的，不适用本办法。 　　**第三十九条** 外资保险公司控股股东不适用本办法第七条第二款的规定；中国保监会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四十条** 本办法由中国保监会负责解释。 **第四十一条** 本办法自2012年10月1日起施行。 |